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153,691,543	64,610,746
일반회계	1,776,822,656	53,304,680
특별회계	376,868,887	11,306,067
공기업특별회계	277,284,604	8,318,53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82,010	47,46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7,268,975	3,518,06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8,433,619	4,753,009
기타특별회계	99,584,283	2,987,528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7,116,679	213,500
수질개선특별회계	13,275,264	398,258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0,562,671	616,880
기반시설특별회계	303,274	9,098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09,257	3,278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403,891	72,11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79,160	44,375
주택사업특별회계	104,418	3,133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50,478,369	1,514,351
지하수특별회계	3,751,300	112,539

제 2 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189,58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7,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교부되는 국도비와 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